



## 수수 금지 선물 처리 절차

### 선물의 상담

- 청탁방지담당관과 **상담**

※ 가액, 사교·의례 목적 불분명한 경우 등

### 선물의 신고

- 소속기관장에게 **신고**

※ 국민권익위원회,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

### 선물의 반환·인도

-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**제공자에게 반환**
- 반환 곤란 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**인도**

※ 선물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

### 조사 및 조치

- 위반 여부 **조사**
-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**통보**
- 징계, 과태료 부과 **통보**

#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

초·중·고등학교  
교직원



국민권익위원회

[www.acrc.go.kr](http://www.acrc.go.kr)



국민신문고

[www.epeople.go.kr](http://www.epeople.go.kr)



국민권익위원회

정부민원안내

**Q 1** 기간제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이다?

**A** 기간제교사는 교원(「교육공무원법」 및 「사립학교법」)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.

**Q 2**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과자 등의 간식을 제공해도 된다?

**A**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줘도 됩니다.

**Q 3** 담임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케잌,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?

**A**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받아서는 안됩니다.

**Q 4**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현장학습, 체험학습 등의 시설에서 무료 입장료를 제공하는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?

**A**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·인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장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.

※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무료 입장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.

**Q 5** 학생(학부모)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?

**A** 현재 담임교사, 교과목 담당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(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)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됩니다.



**6**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(학부모)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?

**A** 학생들(학부모)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.

※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.



**7** 동료 교직원이 주는 자녀 돌반지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?

**A** 동료 교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받아도 됩니다.



**8** 다른 학교로 옮긴 담임교사는 이전 학교의 학생(학부모)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?

**A**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(학부모)과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(100만원 이하)을 받아도 됩니다.



**9** 상급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 하급 교직원들이 모아서 주는 100만원의 전별금을 받아도 된다?

**A**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전별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.

※ 다만,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(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)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.



**10** 담임교사는 졸업식날 학생들(학부모)이 제공하는 꽃다발을 받아서는 안된다?

**A** 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.